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최보윤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9465 발의연월일: 2025. 3. 28.

발 의 자:최보윤·김 건·고동진

이헌승 · 서명옥 · 김선교

조경태 · 서천호 · 김상훈

박성민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법체계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상황에서 긴급성을 이유로 장애인이 제한되거나 배제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. 이는 장애인의생명과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, 장애인의 안전을 고려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책이 미비한실정임.

이에 재난 및 각종 사고 발생 시 장애인을 제한·배제·분리·거부하는 차별행위를 금지하고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정책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(안 제19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9조의2(재난 등 안전관리 상황에서의 차별금지) ① 누구든지 「재 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각 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하 는 상황에서 긴급성을 이유로 장애인을 제한·배제·분리·거부하 여서는 아니 된다.
 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유형·정도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애인안전관리 기본계획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- 1. 재난 및 사고 예방, 안전관리에 관한 장애인 안전관리 매뉴얼 작성
 - 2. 장애인이 쉽게 접근·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, 안전장비 및 용품 의 안전점검 및 개선
 - 3. 재난 및 사고 예방,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애유형별 안전

장비 및 용품의 제공

- 4. 재난 및 사고 예방,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의 제공
- 5. 그 밖에 재난 및 사고 예방, 안전관리를 위하여 장애인에게 필요 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장애인안전관리 기본계획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- ④ 제3항에 따른 의견 수렴 방법,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 <신 설></u>	제19조의2(재난 등 안전관리 상
	황에서의 차별금지) ① 누구든
	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
	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
	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
	사람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의
	안전을 확보하여야 하는 상황
	에서 긴급성을 이유로 장애인
	을 제한·배제·분리·거부하
	여서는 아니 된다.
	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
	애의 유형ㆍ정도 및 특성 등을
	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
	포함된 장애인안전관리 기본계
	획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을
	<u>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</u>
	1. 재난 및 사고 예방, 안전관
	리에 관한 장애인 안전관리
	<u>매뉴얼 작성</u>
	2. 장애인이 쉽게 접근ㆍ이용할
	수 있도록 시설, 안전장비 및
	용품의 안전점검 및 개선
	3. 재난 및 사고 예방, 안전관

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애유형 별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

- 4. 재난 및 사고 예방, 안전관 리에 관한 정보의 제공
- 5. 그 밖에 재난 및 사고 예방, 안전관리를 위하여 장애인에 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 2항에 따른 장애인안전관리 기 본계획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 책을 수립하는 경우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- ④ 제3항에 따른 의견 수렴 방법,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